탄 원 서

제1심 무죄 판단 유지 요청

피고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6노2254
사건명	군기누설 (1심 무죄 사건)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께.

저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군기누설 항소심에서 제1심 무죄 판단의 근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기밀의 존재와 누설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 판단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합니다. 이 사건은 다른 요원 명단 제공 사건과 구별되는 별개의 공소사실인 만큼 독립적인 증거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쟁점은 2024년 12월 2일 문 전 사령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하며 정보사 특수부대의 임무·장비 및 국방부장관에게 한 보고와 관련 지시 등을 언급한 행위가 군사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검 측 항소로 항소심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실제 통화에서 언급된 문구와 기밀의 구체성을 구분하여 주십시오.

제1심은 통화 속 「특수부대, 임무, 장비」 등의 표현 외에 해당 군사임무의 내용이나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별 발언이 어떠한 비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지, 발언 이외의 추정이나 다른 사건의 정황으로 빈 부분을 채우는 것은 아닌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발언으로 인하여 새로운 군사정보가 전달되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제1심은 일부 내용이 외부에도 알려진 조직 편제 및 장비에 관한 언급에 그치고, 통화 상대방이 기존에 알던 내용 이상의 실질적인 정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통화가 어느 정도 드러냈는지, 해당 발언 자체를 중심으로 심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원 이유 (계속)

셋째, 누설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주십시오.

제1심은 문 전 사령관이 당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과 지시를 전달하려는 취지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전후의 발언과 당시 관심사, 실제 전달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증거의 적법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각각 판단해 주십시오.

제1심은 통화가 녹음된 자료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 자료가 담은 구체적 발언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그 증거가 범죄의 모든 요소를 입증하는지는 별개라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엄격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의 중요성이 특정 발언을 곧바로 군사상 기밀의 누설로 평가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에 충실한 판단이야말로 군과 사법제도 모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부디 통화의 실제 내용과 그 구체성, 군사상 위해 가능성 및 누설의 고의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다면 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 _____

주소 : _____